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홍배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2639 |
|----------|------|

발의연월일 : 2025. 3. 21.

발의의원 : 전홍배 의원,

박주용 의원, 서도원 의원

1. 제안이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하도록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책무등·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 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고용의 촉진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며, 이들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해당하면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① 군수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고용의 촉진) ① 군수는 대상자와 아동의 개개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직업능력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상자와 아동이 각종 공공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고용·고용연계 지원
2. 법 제17조 및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3. 법 제17조의6에 따른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4.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을 하는 한부모가족 관련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추진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지원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대상자가 사망 또는 실종 등에 의해 부존재가 확인되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대상자가 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진출한 경우
3. 대상자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4. 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② 군수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로서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할 금액은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 환수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국세강세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체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한부모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련 법인·단체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규정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지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되어 지원받는 것으로 본다.

□ 「한부모가족지원법(법률)」(2024.12.3. 일부개정, 2025.12.4. 시행)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①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③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 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고용의 촉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

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고용지원 연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및 기관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간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 5의2.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産前)·분만·산후(産後)관리,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영양·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 등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와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의7(아동·청소년 보육·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급여를 지급한 지원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1.4.13. 일부개정, 2021.4.21. 시행)

제17조의5(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①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전(産前)·분만·산후(産後) 관리를 위한 영양·건강 교육
2.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3.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심리 치료
4. 그 밖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출산·양육의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의6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전·분만·산후 관리
2. 미혼모와 그 자녀의 질병 예방 및 치료
3. 그 밖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출산·양육의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③ 제2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미혼모 등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료비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관리 및 의료비의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의 소득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관리 및 의료비의 지원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고용·고용연계, 가족지원서비스,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지원,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서 비용 발생이 예상됨(안 제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다년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며, 현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측됨.
- 의안 내용의 대부분이 광범위하고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규 사업 발굴 시 관내 대상자의 수가 적지 않아 재정투입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므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안 제4조제2호)

| 읍·면 | 계 |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 | |
|-----|-------|-------|-------------|------|--------------|-------|
| | 세대수 | 세대원수 | 세대수 | 세대원수 | 세대수 | 세대원수 |
| 계 | 1,367 | 3,397 | 161 | 538 | 1,206 | 2,859 |
| 화원읍 | 215 | 536 | 27 | 97 | 188 | 439 |
| 논공읍 | 120 | 289 | 12 | 41 | 108 | 248 |
| 다사읍 | 386 | 935 | 50 | 173 | 336 | 762 |
| 유가읍 | 132 | 353 | 15 | 51 | 117 | 302 |
| 옥포읍 | 150 | 368 | 14 | 47 | 136 | 321 |
| 현풍읍 | 184 | 454 | 18 | 56 | 166 | 398 |
| 가창면 | 25 | 56 | 3 | 11 | 22 | 45 |
| 하빈면 | 7 | 17 | 1 | 4 | 6 | 13 |
| 구지면 | 148 | 389 | 21 | 58 | 127 | 331 |

(자료 : 복지정책과)

작성자

소속 및 직위

달성군의회 의원

성명(연락처)

박주용 (☎ 2292)